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의 위촉요건 완화 등 >

- 김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773호)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864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1. 김주영의원 대표발의안 .....                    | 1  |
| 2.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안 .....                    | 2  |
| III. 검토의견 .....                         | 5  |
| 1. 물순환의 개념에 급·배수시설에 의한 물순환도 포함 .....    | 5  |
| 2.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등의 위촉요건 완화 .....   | 8  |
| 3.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명확화 및 확대 .....    | 15 |
| 4. 해측으로 인해 신규 위촉되는 위원 임기를 별도로 규정 .....  | 20 |
| 5. 국가계획 및 유역계획의 이행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 22 |
| 6.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 효율화 규정 마련 .....      | 26 |
| ※ 참고자료 .....                            | 30 |
| 1. 물관리위원회 개요 .....                      | 30 |
| 2.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 현황 .....             | 31 |
| 3. 대통령 소속 주요 위원회 위원 위촉 요건 .....         | 33 |
| 4. 대통령 소속 주요 위원회 위원 잔여 임기 조항 .....      | 34 |
| 5. 2024년 유역물관리위원회 동일안전 중복심의 목록 .....    | 35 |

## I. 제안경위

| 연번 | 의안번호    | 법률명    | 발의일        | 회부일        | 대표발의  |
|----|---------|--------|------------|------------|-------|
| 1  | 2214773 | 물관리기본법 | 2025.12.02 | 2025.12.03 | 김주영의원 |
| 2  | 2215864 |        | 2026.01.06 | 2026.01.07 | 한정애의원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김주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4773호)

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요건을 보면 물관리 분야에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 물관리 분야, 법조계 분야로 한정했을 뿐만 아니라 경력도 10년 이상인 사람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특히, 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장 위촉요건은 물관리 분야의 대학·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물관련 단체·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민간위원보다 위촉요건을 더욱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어 대통령 소속 다른 위원회에 비해 민간위원장 및 민간위원의 위촉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물관리 정책은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조정, 통합하는 부분도 중요함. 따라서 현재의 전문성 중심의 민간위원장 및 민간위원 자격 요건은 청년세대, 갈등조정 등 다양한 분야 경험을 가진 사람 등의 참여를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위촉요건을 물관리에 관한 정책, 연구, 산업 등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확대해 다양한 분야의 유능한 전문가나 경험을 가진 사람이 민간위원에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 물관리위원회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3호 개정 등).

## 2.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5864호)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등 물 관련 재해의 빈발과 함께 물환경 여건의 변화와 물 이용의 양상이 점차 복잡화·다양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에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물순환의 개념을 자연계로 한정하고 있어 급·배수시설 등 인공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물순환 활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위원의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현장 전문가의 참여가 제약되고 위원회의 전문성을 폭넓게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국가물관리종합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물관리계획”이라 함)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점검과 성과평가 절차가 미흡하여, 계획의 실행력과 책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유역 내 이해관계의 복잡성 등으로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가 어려운 사안의 경우 심의가 지연되는 등 물관리의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물순환 개념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물관리계획의 이행 관리와 평가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가. 자연계에 한정되어 있던 물순환의 개념에 인공적 요인에 의한 물순환을 포함하도록 정의를 확대함(안 제3조).

나.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물관리 분야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 제23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

다.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함(안 제22조).

라. 위원회 위원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5조제1항).

마. 물관리계획에 대해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주요 성과를 평가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7조의2 및 제28조의2).

바. 물관리 관련 계획이 둘 이상의 유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계되는

유역물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한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 Ⅲ. 검토의견

#### 1. 물순환의 개념에 급수·배수시설에 의한 물순환도 포함

개정안은 현행법 상 물순환의 개념에 급수시설과 배수시설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물순환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한정애 의원안 제3조제1호).

[ 표 ]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 행                                                                                                      | 한정애 의원안                                                                                               |
|----------------------------------------------------------------------------------------------------------|-------------------------------------------------------------------------------------------------------|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정의) -----<br>-----.                                                                               |
| 1.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호수·늪·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u>흐름</u> 을 말한다. | 1. -----<br>-----<br>-----<br>-----<br>-----<br>--- <u>흐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배수시설에 의한 물순환을 포함한다)</u> -----. |
| 2. ~ 4. (생략)                                                                                             | 2. ~ 4. (현행과 같음)                                                                                      |

현행법<sup>1)</sup>은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관리,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1)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관리,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물순환”의 개념을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호수·늪·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일련의 자연적인 순환 과정으로 규정<sup>2)</sup>하고 있음.

한편,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한 가뭄, 홍수 등으로부터 건전한 물순환체계를 구축<sup>3)</sup>하기 위해 제정(2023.10.24)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순환촉진법”이라 함)은 물순환의 정의를 「물관리기본법」에서 인용<sup>4)</sup>하고 있으나

물순환촉진법 상 “물순환시설”에는 수도, 하수도, 수자원시설 등 인공시설이 포함되어 있고<sup>5)</sup>,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sup>6)</sup>

---

2) 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호수·늪·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3)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한 가뭄·홍수 등 재해와 물 부족,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水生態系)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 관리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이란 「물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물순환을 말한다.

5)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물순환 시설”이란 물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 재이용시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다.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

마. 「지하수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및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바.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사.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아. 그 밖에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물순환 촉진구역”이란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물순환 촉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물

지정<sup>7)</sup> 및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sup>8)</sup> 등을 통해 물순환을 인위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물관리기본법」상 물순환의 개념에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상 물순환의 개념에 급수시설과 배수시설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물순환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물순환의 정의를 확대해 법률 간 통일된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정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급·배수시설의 종류는 관련 법인 「물순환촉진법」 제2조제3호(물순환 시설)에 이미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인 「물관리기본법」은 인위적인 물순환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순환 촉진 시책·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7)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물순환 촉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제7조에 따른 제안을 받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2. 수자원부족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물공급에 차질이 있거나 가뭄·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

8)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지정한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하여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에 따라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물순환 촉진구역에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특정도시하천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된 경우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침수방지시설을 제외하고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등의 위촉요건 완화

개정안은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과 민간위원장의 위촉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물관리분야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김주영·한정애 의원안 제21조제3항, 제23조제3항).

[ 표 ]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김주영 의원안                                                                                                                                                                                                                  | 한정애 의원안                                                                                                                                                                       |
|-----------------------------------------------------------------------------------------------------------------------------------------------------------------------------------------------------------------------------------|--------------------------------------------------------------------------------------------------------------------------------------------------------------------------------------------------------------------------|-------------------------------------------------------------------------------------------------------------------------------------------------------------------------------|
| 제21조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 등) ① (생략)<br>②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br>③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br>1. 2. (생략)<br>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 제21조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br>② -----<br>----- 제3항제3호 -----<br>-----<br>-----<br>-----<br>③ -----<br>-----<br>-----<br>-----<br>1. 2. (현행과 같음)<br>3. 물관리에 관한 정책, 연구, 산업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 제21조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br>② -----<br>-----<br>-----<br>-----<br>-----<br>-----<br>③ -----<br>-----<br>-----<br>-----<br>1. 2. (현행과 같음)<br>3. -----<br>-----<br>----- |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물관  
리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  
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물 관련 단체나 기  
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법관, 검사 또는 변  
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그 밖에 사회적 신  
망이 높고 물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

④ · ⑤ (생략)

제23조 (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과 제3항제  
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 위  
원장의 공동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  
람으로 한다.

가. 대학에서 물관리  
분야의 부교수 이상  
의 직에 있거나 있  
었던 사람

나. 대학, 공인된 연구  
기관 및 물 관련 단  
체나 기관에서 물관  
리 분야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  
-----  
-----

라. \_\_\_\_\_  
\_\_\_\_\_  
\_\_\_\_\_  
\_\_\_\_\_

④・⑤ (현행과 같음)

제23조 (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 (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제3항제  
3호 —————  
—————  
—————  
—————  
—————  
—————

③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  
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중에서 유역 관계  
시·도지사가 추천하  
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물관  
리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  
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물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10년 이  
상 종사한 사람

다.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  
상 재직한 사람

라. 그 밖에 유역의  
주민으로서 사회

③ -----  
-----  
-----  
-----  
-----.

1. 2. (현행과 같음)

3. 물관리에 관한 정책,  
연구, 산업 등 관련 분  
야에 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  
-----  
-----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③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  
-----  
-----  
-----

가. 대학에서 물관리  
분야의 부교수 이  
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나. 대학, 공인된 연구  
기관 및 물 관련 단  
체나 기관에서 물관  
리 분야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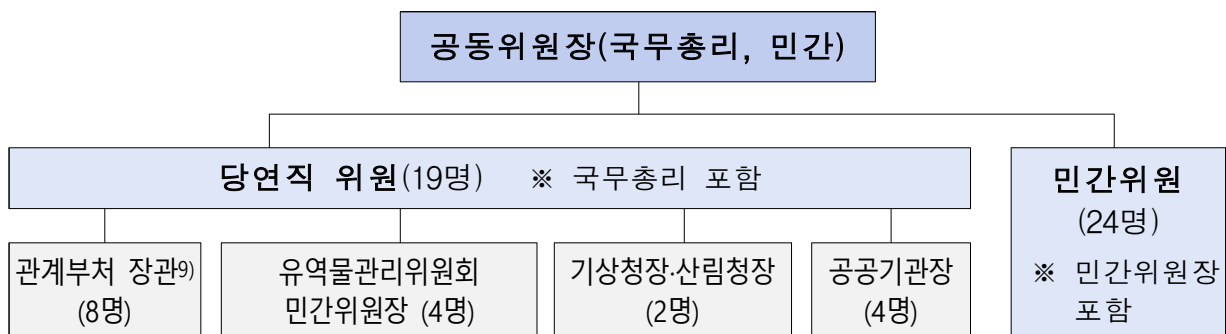
라. -----  
-----

|                                    |              |                         |
|------------------------------------|--------------|-------------------------|
| 적 신망이 높고<br>물관리 분야에 경<br>험이 풍부한 사람 |              | -----<br>-----<br>----- |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④・⑤ (현행과 같음)            |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위”)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물분쟁 조정, 물 관련 현안 등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로서 물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이고,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위”)는 유역 내 물 관련 의사결정기구로서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물분쟁 조정 등 유역 내 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유역별로 설치된 기구임.

국가위는 위원장 2명(국무총리,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민간위원(위원장 포함)은 대학, 연구기관, 물관련 단체·기관, 법조계 전문가 중 대통령이 위촉하고 있으며,

#### [ 국가위 구성현황('26년 2월 말 현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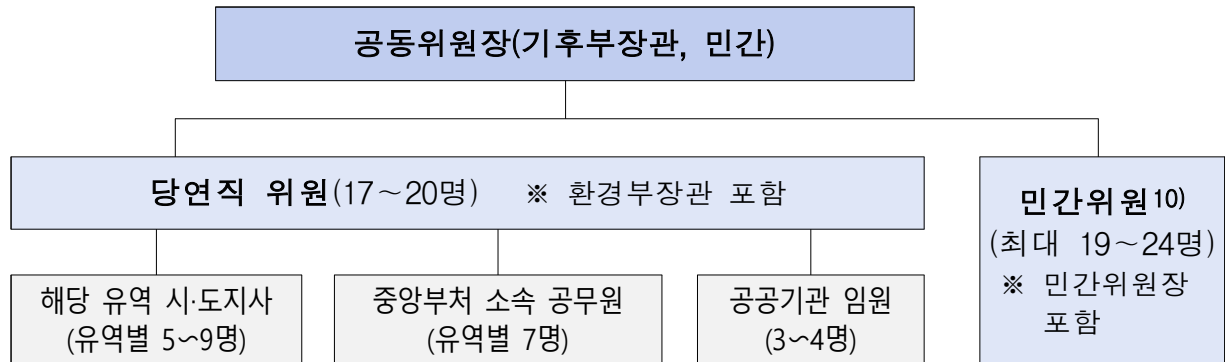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9) 재경부장관, 행안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부장관, 기후부장관, 국토부장관, 해수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등 8명

유역위는 위원장 2명(기후부 장관, 민간) 포함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민간위원은 시·도지사가 추천하며 국가위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하고 있음.

[ 유역위 구성현황('26년 2월 말 현재)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런데 현행법 상 국가위와 유역위 민간위원 위촉요건이물관리 분야, 법조계 분야로 한정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경력도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되어,물관리위원회에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위촉을 저해하고, 특정 분야 중심으로 민간위원이 구성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국가위 민간위원 위촉 요건(법 제21조제3항제3호) ]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물관리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물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물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 총 87명. 한강수계 24명, 낙동강수계 22명, 금강수계 22명, 영산강·섬진강수계 19명

[ 유역위 민간위원 위촉 요건(법 제23조제3항제3호) ]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물관리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물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해당 유역의 주민으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고 물관리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위원장 포함) 위촉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물관리 분야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 민간위원 위촉 요건 완화 관련 개정안 비교 ]

| 구 분  | 현 행                                                                                                                                                                        | 김주영의원안                                                    | 한정애의원안                                                                                                                                |
|------|----------------------------------------------------------------------------------------------------------------------------------------------------------------------------|-----------------------------------------------------------|---------------------------------------------------------------------------------------------------------------------------------------|
| 위원장  | -물관리 분야 부교수, 물 관련 단체(기관) 근무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br>(국가, 유역)                                                                                                                    | -물관리에 관한 정책, 연구, 산업 등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br>(국가, 유역) | 아래 사항 외에 현행과 같음<br>(국가, 유역)                                                                                                           |
| 민간위원 | -물관리 분야 부교수, 물 관련 단체(기관), 법관·검사·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재직(종사)한 사람<br>(국가, 유역)<br>-사회적 신망이 높고, 물 관리 분야에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br>(국가)<br>-해당 유역의 주민으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고, 물관리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br>(유역) | (상 동)                                                     | ①부교수 이상 직에 10년 이상 재직→부교수 이상<br>(10년 이상 재직기간 삭제)<br><br>②대학,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직에 10년 이상 재직→대학,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재직<br>(부교수 이상 직책 삭제) |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물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조정, 통합하는 능력도 요구된다는 점과 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위촉을 가능하게 한 타 위원회 사례를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주요 대통령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요건 ]

| 위원회<br>(근거법)                  | 민간위원 위촉 요건                                           |
|-------------------------------|------------------------------------------------------|
| 2050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br>(탄소중립기본법) |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 국가건축정책위원회<br>(건축기본법)          | 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 국가도서관위원회<br>(도서관법)            | 도서관 또는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br>(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 고용노동·경제·사회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br>(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br>(지속가능발전법)      |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한편, 현행법 상 유역위 민간위원은 해당 유역 시·도지사만 추천하도록 규정<sup>11)</sup>되어 있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물관리지원단)는 다양한 분야의 인재 추천을 위해 유역 내 물 관련 기관·단체도 추천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11) 제23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③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유역 관계 시·도지사가 추천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하는 사람  
(각 목 생략)

### 3.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명확화 및 확대

개정안은 ①현행법 상 국가물관리계획과 부합 여부 심의 대상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김주영 의원안 제22조제5호), ② 국가위 및 유역위 심의 사항에 유역위가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한정애 의원안 제22조제8호 및 제24조제5호).

[ 표 ]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김주영 의원안                                         | 한정애 의원안                                         |
|---------------------------------------------------------------|-------------------------------------------------|-------------------------------------------------|
| 제22조(국가물관리위원회<br>의 기능)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22조(국가물관리위원회<br>의 기능) -----<br>-----<br>-----. | 제22조(국가물관리위원회<br>의 기능) -----<br>-----<br>-----. |
| 1. ~ 4.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 1. ~ 4. (현행과 같음)                                |
| 5. <u>관계 중앙행정기관이<br/>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u><br>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 5. <u>제27조제3항에 따른</u> -----<br>-----<br>-----   | 5. -----<br>-----<br>-----                      |
| 6. · 7. (생략)                                                  | 6. · 7. (현행과 같음)                                | 6. · 7. (현행과 같음)                                |

|                                                                                                                                                          |                                                                                                         |                                                                                                                                                                                                                                    |
|----------------------------------------------------------------------------------------------------------------------------------------------------------|---------------------------------------------------------------------------------------------------------|------------------------------------------------------------------------------------------------------------------------------------------------------------------------------------------------------------------------------------|
| <u>&lt;신 설&gt;</u><br><br>8.·9. (생 략)<br><br>제24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기능)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br>1. ~ 4. (생 략)<br><u>&lt;신 설&gt;</u><br><br>5.·6. (생 략) | 8.·9. (현행과 같음)<br><br>제24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기능) -----<br>-----<br>-----<br>1. ~ 4. (생 략)<br><br>5.·6. (현행과 같음) | 8. <u>유역물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br>9.·10.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br>제24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기능) -----<br>-----<br>-----<br>1. ~ 4. (현행과 같음)<br>5. <u>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u><br>6.·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
|----------------------------------------------------------------------------------------------------------------------------------------------------------|---------------------------------------------------------------------------------------------------------|------------------------------------------------------------------------------------------------------------------------------------------------------------------------------------------------------------------------------------|

현행법 제22조<sup>12)</sup>에 따르면 국가위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유역

12) 「물관리기본법」 제22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29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3. 수계별 유역 범위의 지정
4.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간 물 이동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6. 제32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물분쟁의 조정
  - 가.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물분쟁
  - 나.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분쟁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분쟁
7.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8. 물관리와 관련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9.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간 물 이동 등을 심의하고, 동법 제24조<sup>13)</sup>에 따라 유역위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변경, 유역 내 물 이동, 유역 내 발생한 물분쟁 조정 등을 심의·의결함.

[ 국가위 및 유역위 심의 사항(법 제22조 및 제24조) ]

| 국가물관리위원회("국가위")                       | 유역물관리위원회("유역위")                     |
|---------------------------------------|-------------------------------------|
| 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이하 "국가계획") 수립·변경         | ①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의 수립·변경       |
| ② 유역계획의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                  |                                     |
| ③ 수계별 유역 범위의 지정                       |                                     |
| ④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간 물 이동               | ②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내 물 이동             |
| ⑤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의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 | ③ 지자체장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의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 |
| ⑥ 물분쟁의 조정                             | ④ 유역 내 물분쟁의 조정                      |
| ⑦ 국가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                                     |
| ⑧ 국가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⑤ 유역 내 물관리와 관련하여 유역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 ⑨ 타법에 따라 국가위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 ⑥ 타법에 따라 유역위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

현행법 제22조제5호에는 국가위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과 최상위 국가 전략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sup>14)</sup>과

13) 「물관리기본법」 제24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기능)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유역 내 물관리 관련 계획의 해당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
3.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내 물 이동
4. 제32조에 따른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 조정(제22조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5. 유역 내의 물관리와 관련하여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14)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수량·수질·수자원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국가 전략계획임.

의 부합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sup>15)</sup>되어 있으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이 의미하는 바가 구체적이지 않아 계획의 종류를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유역위 심의사항 중 유역 내 상하류 간 갈등, 지자체 간 이해관계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유역위가 심의하기 어려워 장기간 논의가 지연되는 사안<sup>16)</sup>에 대해서는 국가위에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국가계획의 이행상황 평가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는 현행법 상 국가위 심의·의결 사항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이행상황 평가” 등은 유역위 심의·의결사항에 누락되어 있어, 유역위의 기능 규정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물관리 관련 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동 법 제27조제3항<sup>17)</sup>을 인용하여, 국가물관리계획과 부합 여부 심의 대상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

15) 법 제22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16) 대구지역 취수원 다변화 관련 안동댐 통합물관리방안 변경(안)의 경우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가 '24년 12월에 유역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1년이 경과한 '25년 12월, 재검토 요청 의결(낙동강 본류 수질개선 우려, 하류 지역 피해 우려, 경제성 및 타당성 부족 등 사유)

17) 법 제27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계획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관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 중 유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유역위가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국가위),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유역위) 등을 국가위와 유역위의 심의 사항에 추가하여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기능 규정을 정비 하려는 것으로,

국가위와 유역위의 심의 안건을 명확하게 하고, 위원회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심의 안건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제22조제8호 및 제24조제5호<sup>18)</sup>와 관련하여서는 유역위가 소관 심의·의결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도 국가위에 심의를 요청 하거나 심의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제24조에 따른 유역위의 심의·의결 사항 중” 유역위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국가위가 필요성을 검토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2조제8호),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를 “유역 내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로 제한(안 제24조제5호)하는 등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

18)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안 제22조제8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안 제24조제5호)

#### 4. 해촉으로 인해 신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를 별도로 규정

개정안은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려는 것임(한정애 의원안 제25조제1항 단서 신설).

[ 표 ]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 행                                                                                                                                                   | 한정애 의원안                                                                                                                                                                                          |
|-------------------------------------------------------------------------------------------------------------------------------------------------------|--------------------------------------------------------------------------------------------------------------------------------------------------------------------------------------------------|
| 제25조(위원의 임기 등) ①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제21조제3항제3호 및 제2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u>위원</u> 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 제25조(위원의 임기 등) ① -----<br>-----<br>-----<br>-----<br>----- <u>위원</u><br>(이하 이 조에서 “ <u>위촉위원</u> ”이라 한다)의-----<br>----- <u>. 다만,</u><br><u>위촉위원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
| ② 물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u>제21조제3항제3호 및 제23조제3항제3호에 해당되는 위원</u> 중에서 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② -----<br>----- <u>위촉위원</u> -----<br>-----<br>-----.                                                                                                                                            |

현행법은 국가위 위원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과 유역위 위원 중 국가위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함)

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sup>19)</sup>.

그런데 위촉위원 중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중도에 해촉되는 경우  
신임위원의 임기 역시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정해짐에 따라 위원 간  
임기가 상이해져 기수별 위원회 운영<sup>20)</sup>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려  
는 것으로, 기수별 위원회 활동 기한과 위원 임기의 통일성을 기해 위  
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과 유사 입법례<sup>21)</sup>(대통령 소속 위원  
회 위원의 잔여 임기 규정)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임.

19) **법 제25조(위원의 임기 등)** ①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제21조제3항제3호 및 제2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  
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20)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 활동 기한

| 구분 | 국가물관리위원회(국가위)                | 유역물관리위원회(유역위)               |
|----|------------------------------|-----------------------------|
| 1기 | 2019년 7월 31일 ~ 2022년 7월 30일  | 2019년 8월 26일 ~ 2022년 8월 28일 |
| 2기 | 2022년 8월 26일 ~ 2025년 11월 22일 | 2023년 5월 12일 ~ 2026년 5월 11일 |
| 3기 | 2026년 2월 3일 ~ 2029년 2월 2일    | -                           |

21) 대통령 소속 주요 위원회 위원 잔여 임기 입법례(참고자료4..참조)

| 위원회명<br>(근거법)                    | 위촉위원 잔여임기                                                                                              |
|----------------------------------|--------------------------------------------------------------------------------------------------------|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br>(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 법 제1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해촉<br>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u>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
|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br>(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 법 제23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br>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u>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
| 지방시대위원회<br>(지방분권균형발전법)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br>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u>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
| 국가도서관위원회<br>(도서관법)               |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권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br>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u>전임위원의 잔여기<br/>간으로 한다.</u> |

## 5. 국가계획 및 유역계획의 이행 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은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함)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이라 함)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계획과 유역계획 이행 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한정애 의원안 제27조의2 및 제28조의2 신설).

[ 표 ]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 행   | 한정애 의원안                                                                                                                                                                                                                                                                        |
|-------|--------------------------------------------------------------------------------------------------------------------------------------------------------------------------------------------------------------------------------------------------------------------------------|
| <신 설> | <p>제27조의2(국가계획의 이행평가) ①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계획의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여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의견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 및 결</p> |

|                    |                                                                                                                                                                                                                                                                                                                                                                                                        |
|--------------------|--------------------------------------------------------------------------------------------------------------------------------------------------------------------------------------------------------------------------------------------------------------------------------------------------------------------------------------------------------------------------------------------------------|
| <p>&lt;신 설&gt;</p> | <p><u>과의 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제28조의2(유역계획의 이행평가) ①</u></p> <p><u>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유역계획의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여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u></p> <p><u>②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의견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u></p> <p><u>③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 및 결과의 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
|--------------------|--------------------------------------------------------------------------------------------------------------------------------------------------------------------------------------------------------------------------------------------------------------------------------------------------------------------------------------------------------------------------------------------------------|

국가계획은 수량·수질·수자원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위의 심의를 거쳐 10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국가 전략계획이며,

유역계획은 국가계획을 기초로 유역 물관리 여건의 변화와 전망, 유역 수자원 개발·보전·다변화와 물의 공급·이용·배분 등을 위해 유역위 위원장이 국가위와 유역위 심의를 거쳐 10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임.

현행법 제27조제1항<sup>22)</sup>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국가계획에 연도별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2조<sup>23)</sup>에서는 국가위가 이를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역계획의 경우에는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에는 국가계획과 유역계획 이행상황 점검, 평가, 결과 공개, 평가 결과 반영 등 평가 절차에 관한 대강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행 평가의 법적 근거와 관계 기관에 대한 구속력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가위와 유역위 위원장이 국가계획과 유역계획의 이행상황을 각각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해당 기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가계획과 유역계획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계 기관이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임.

---

22) 법 제27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1. 그 밖에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 시행령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7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의 연도별 이행 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23) 법 제22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7.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27조의2 및 제28조의2에서는 “이행상황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방법 및 결과의 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상황 외에 무엇을 평가하는지, 평가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평가 대상, 평가 항목 및 기준 등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범위에 관한 대강이라도 법률에서 정하여 위임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안 제28조의2제2항에 따르면 유역위 위원장은 이행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역계획의 경우 유역 수자원의 개발·보전·다변화, 유역의 물환경 보전, 관리 및 복원 등 해당 유역 지자체와 관련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sup>24)</sup>, 유역위 위원장이 유역계획의 이행 평가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의견제시 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 대상을 확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24) **법 제30조(유역계획의 적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유역계획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관하여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6.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 효율화 규정 마련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 관리 관련 계획 변경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 국가위와 유역위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고(한정애 의원안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1항), 물 관리 관련 계획이 둘 이상의 유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련 유역위 간 협의 후 한 곳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한정애 의원안 제30조제1항 단서 신설).

[ 표 ]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 행                                                                                                                                                                                                                         | 한정애 의원안                                                                                                                      |
|-----------------------------------------------------------------------------------------------------------------------------------------------------------------------------------------------------------------------------|------------------------------------------------------------------------------------------------------------------------------|
| 제27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략)                                                                                                                                                                                              | 제27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계획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u>변경하려는 때에는</u>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관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 중 유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③ -----<br>-----<br>-----<br>-----<br>----- <u>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u> 하려는-----<br>-----<br>-----<br>-----<br>-----. |
| ④·⑤ (생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                                                                                                                                                                    |                                                                                                                                                                                                                    |
|--------------------------------------------------------------------------------------------------------------------------------------------------------------------|--------------------------------------------------------------------------------------------------------------------------------------------------------------------------------------------------------------------|
| 제30조(유역계획의 적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유역계획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 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물 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u>변경하려는</u> 때에는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관하여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 제30조(유역계획의 적용) ① -----<br>-----<br>-----<br>-----<br>----- <u>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려는</u> -----<br>-----<br>----- <u>. 다만, 물 관리 관련 계획이 둘 이상의 유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유역물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한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u> |
| ②·③ (생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 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국가계획,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관하여 각각 국가위와 유역위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sup>25)</sup>.

25) 법 제27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계획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 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물 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관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물 관리 관련 계획 중 유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법 제30조(유역계획의 적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유역계획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 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물 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관하여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단양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한강, 낙동강)과 고창군 물재이용관리계획(금강, 영산강) 등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물 관련 계획에는 행정구역 특성 등으로 복수의 유역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음.

이와 같이 하나의 계획이 2개 이상의 유역에 걸쳐 수립되는 경우 현재는 복수의 유역위가 심의하고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24년 유역위 전체 심의 안건(상위 계획과 부합 여부 심의) 204건 중 복수 위원회에서 중복으로 처리한 심의는 51건으로 약 25%에 해당함(참고자료 5. 2024년 유역물관리위원회 동일안건 중복 심의 목록 참조).

또한 국가위와 유역위가 2024년 심의한 상위 계획과의 부합 여부 심의 안건 총 217건(국가위 13건) 중 187건(약 86%)은 기존에 수립된 계획의 변경 시 실시한 ‘변경 심의’로<sup>26)</sup>,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가위와 유역위가 복수 위원회의 중복심의 및 단순 변경사항에 대한 국가계획 등과의 부합 여부 심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위원회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 관리

26) 2024년 국가위와 유역위 변경심의 현황(건수, 건당 평균 처리기간)

| 구분     | 국가위  | 유역위 |     |     |         |
|--------|------|-----|-----|-----|---------|
|        |      | 한강  | 낙동강 | 금강  | 영산강·섬진강 |
| 총 심의건수 | 13건  | 72건 | 51건 | 31건 | 50건     |
| 변경심의건수 | 8건   | 70건 | 50건 | 19건 | 40건     |
| 건당처리기간 | 133일 | 60일 | 90일 | 74일 | 80일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관련 계획 변경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sup>27)</sup>하는 경우 국가위와 유역위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고, 물 관리 관련 계획이 둘 이상의 유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련 유역위 간 협의 후 한 곳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위와 유역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현재 유역위 심의 대상 안건(상위계획과 부합 여부) 중 상당수(25%)가 둘 이상 위원회의 중복심의 안건인 점과 계산착오, 오기, 누락 등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위와 유역위의 심의 사항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
|--------------|
| 문 의 처        |
| 02)6788-5547 |

27) “경미한 변경”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대통령령 검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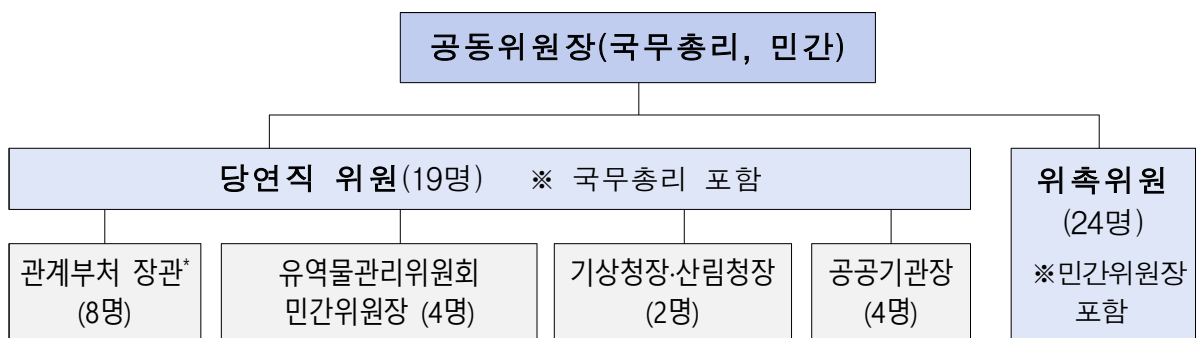
①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② 국가계획이나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연계되는 물관리 관련 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등

## 참고자료 1

## 물관리위원회 개요

□ (구성) 「물관리기본법」(‘19.6.12. 시행) 제20조에 따라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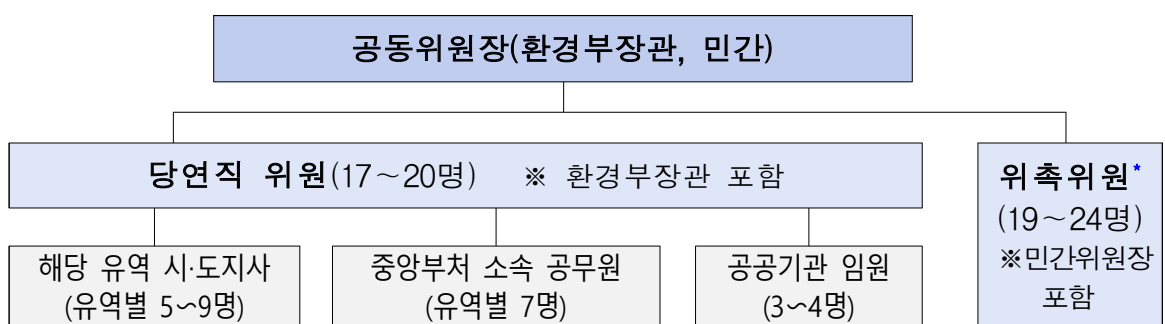
- (국가위) 공동위원장 2명(국무총리, 민간) 포함 **43명**(당연직 19명 포함)
  - 위촉위원(민간위원장 포함)은 대학, 연구기관, 물관련 단체·기관, 법조계 전문가 중 대통령이 위촉(임기 3년, 1회 연임 가능)



\* 기재부 / 행안부 / 농림부 / 산업부 / 환경부 / 국토부 / 해수부 장관 / 국무조정실장

- (유역위) 4개 유역위별로 공동위원장 2명(환경부장관, 민간) 포함 **36~43명**
  - 위촉위원은 시·도지사가 추천하고 국가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임기 3년, 1회 연임 가능)

\* 단, 유역위 민간위원장은 국가위 위원장이 공동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



\* (위촉위원) 2기 87명(한강 24, 낙동강 22, 금강 22, 영·섬강 19) // (당연+위촉위원) 한강 43명(당연19+위촉24), 낙동강 42명(20+22), 금강 41명(19+22), 영·섬 36명(17+19)

□ (기능) 물관리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이행평가, 물분쟁 조정, 물관련 현안 등 물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 참고자료 2

##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 현황

### 국가물관리위원회(제3기)

#### □ 구성현황

|                |                                                                                                                                                                                                                                                             |
|----------------|-------------------------------------------------------------------------------------------------------------------------------------------------------------------------------------------------------------------------------------------------------------|
| 당 연 직<br>(19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국무총리 (공동위원장)</li> <li>▶ (8)재정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기후부·국토부·해수부장관, 국무조정실장</li> <li>▶ (2)기상청장, 산림청장</li> <li>▶ (4)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주)·농어촌공사 사장, 환경공단 이사장</li> <li>▶ (4)유역물관리위원장(한강 전경수, 낙동강 남광희, 금강 김건하, 영섬 김민환)</li> </ul> |
| 민간위촉<br>(2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석좌교수 (공동위원장)</li> <li>▶ (23)곽동희 전북대 바이오융합과학과 교수 등 민간위원 23인<br/>※ 간사, 분과위원장(3명) 미선임(2026년 2월 말 현재)</li> </ul>                                                                                       |

#### ○ 위촉직 민간위원

| 연번 | 직위  | 성명  | 소속                      | 분야   | 비고 |
|----|-----|-----|-------------------------|------|----|
| 1  | 위원장 | 김좌관 | 부산가톨릭대 석좌교수             | -    |    |
| 2  | 위원  | 곽동희 | 전북대 바이오융합과학과 교수         | 수질   |    |
| 3  |     | 오정은 | 부산대 환경공학과 교수            | 수질   |    |
| 4  |     | 김정희 | (주)에코리서치 대표이사           | 수생태계 |    |
| 5  |     | 노태호 | 강원대 생태조경디자인학과 교수        | 수생태계 |    |
| 6  |     | 도윤호 | 국립공주대 생명과학과 교수          | 수생태계 |    |
| 7  |     | 안병철 | 원광대 산림조경학과 교수           | 수생태계 |    |
| 8  |     | 백경오 | 한경국립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 수자원  |    |
| 9  |     | 홍승호 | 한양대 ERICA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 수자원  |    |
| 10 |     | 구자용 |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          | 상하수도 |    |
| 11 |     | 권지향 | 건국대 사회환경공학부 교수          | 상하수도 |    |
| 12 |     | 김형수 | 중원대 글로벌융합인재학과 교수        | 지하수  |    |
| 13 |     | 맹승진 | 충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 농업   |    |
| 14 |     | 조희성 |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중앙회장     | 농업   |    |
| 15 |     | 홍안나 | (사)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처장    | 농업   |    |
| 16 |     | 김래진 | (주)테크윈시스템 대표이사          | 물산업  |    |
| 17 |     | 박종원 | 부경대 법학과 교수              | 법    |    |
| 18 |     | 서국화 | 법무법인 올림 변호사             | 법    |    |
| 19 |     | 강호열 |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            | 시민단체 |    |
| 20 |     | 김도형 |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사무총장         | 시민단체 |    |
| 21 |     | 박은영 |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 시민단체 |    |
| 22 |     | 신재은 | (재)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소장      | 시민단체 |    |
| 23 |     | 이준경 | 한국강살리기 네트워크 대표          | 시민단체 |    |
| 24 |     | 이철재 | 환경운동연합 생명의 강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시민단체 |    |

## 유역물관리위원회(제2기)

### □ 구성현황

| 구 분         |                 | 유역위원회              |                                                                |                                                                                              |                                                                                        |
|-------------|-----------------|--------------------|----------------------------------------------------------------|----------------------------------------------------------------------------------------------|----------------------------------------------------------------------------------------|
|             |                 | 한강                 | 낙동강                                                            | 금강                                                                                           | 영산강·섬진강                                                                                |
| 합 계         |                 | 43                 | 42                                                             | 41                                                                                           | 36                                                                                     |
| 당연직<br>위원   | 당연직 계           | 19                 | 20                                                             | 19                                                                                           | 17                                                                                     |
|             | 당연직위원장          | 기후부부장관             | 기후부장관                                                          | 기후부장관                                                                                        | 기후부장관                                                                                  |
|             | 시·도지사           | 소계                 | 7                                                              | 9                                                                                            | 8                                                                                      |
|             |                 | 유역내<br>관계<br>시·도지사 | 서울특별시<br>인천광역시<br>경기도지사<br>강원도지사<br>충청북도지사<br>충청남도지사<br>경상북도지사 | 부산광역시<br>대구광역시<br>울산광역시<br>강원도지사<br>충청북도지사<br>충청남도지사<br>전라북도지사<br>전라남도지사<br>경상북도지사<br>경상남도지사 | 대전광역시<br>세종특별자치시장<br>경기도지사<br>충청북도지사<br>충청남도지사<br>전라북도지사<br>전라남도지사<br>경상북도지사<br>경상남도지사 |
|             |                 | 소계                 | 7                                                              | 7                                                                                            | 7                                                                                      |
|             |                 | 유역환경청장             | 한강                                                             | 낙동강                                                                                          | 금강                                                                                     |
|             |                 | 지방환경청장             | 원주                                                             | 대구                                                                                           | 전북                                                                                     |
|             | 중앙<br>부처        | 홍수통제소장             | 한강                                                             | 낙동강                                                                                          | 금강                                                                                     |
|             |                 | 물환경연구소장            | 한강                                                             | 낙동강                                                                                          | 금강                                                                                     |
|             |                 | 농림부장관 추천           | 식량정책관                                                          | 식량정책관                                                                                        | 식량정책관                                                                                  |
|             |                 | 산림청장 추천            | 북부지방산림청장                                                       | 남부지방산림청장                                                                                     | 중부지방산림청장                                                                               |
|             | 소속<br>공무원       | 기상청장 추천            | 수도권기상청장                                                        | 부산지방기상청장                                                                                     | 대전지방기상청장                                                                               |
|             |                 | 소계                 | 4                                                              | 3                                                                                            | 3                                                                                      |
|             |                 | 한국농어촌공사            | 경기지역본부장                                                        | 경남지역본부장                                                                                      | 충남지역본부장                                                                                |
|             |                 | 한국수자원공사            | 한강유역본부장                                                        | 낙동강유역본부장                                                                                     | 금강유역본부장                                                                                |
|             | 공공<br>기관장<br>추천 | 한국환경공단             | 수도권동부환경본부장                                                     |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장                                                                                | 충청권환경본부장                                                                               |
|             |                 | 한국수력원자력            | 한강수력본부장                                                        | -                                                                                            | -                                                                                      |
|             |                 |                    |                                                                |                                                                                              | 영·섬유역본부장                                                                               |
| 위촉직<br>민간위원 | 위촉직 계           | 24                 | 22                                                             | 22                                                                                           | 19                                                                                     |
|             | 위원장             | 1                  | 1                                                              | 1                                                                                            | 1                                                                                      |
|             | 위원              | 23                 | 21                                                             | 21                                                                                           | 18                                                                                     |

### 참고자료 3

### 대통령 소속 주요 위원회 위원 위촉요건

| 위원회                              | 자격 요건                                                                                                 |
|----------------------------------|-------------------------------------------------------------------------------------------------------|
|                                  | 위원(위원장)                                                                                               |
| 2050탄소중립<br>녹색성장위원회<br>(탄소중립기본법) |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br>(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   | 가. 농업 및 수산업 생산자 단체 대표<br>나.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관련 분야의 사람<br>(농어업·농어촌 대한 이해도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
| 국가건축정책위원회<br>(건축기본법)             | 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 국가도서관위원회<br>(도서관법)               | 도서관 또는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br>(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 고용노동·경제·사회 문화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br>(위원장: 별도 요건 없음)                                                |
|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br>(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br>(위원장: 대통령)                                                            |
| 지방시대위원회<br>(지방분권균형발전법)           |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
|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br>(지속가능발전법)         |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 참고자료 4

## 대통령 소속 주요 위원회 위원 잔여 임기 조항

| 위원회명         | 법조항                       | 위원 자격요건                                                                                                                                                       |
|--------------|---------------------------|---------------------------------------------------------------------------------------------------------------------------------------------------------------|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 탄소중립기본법<br>시행령<br>제11조    | <p>② 법 제1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③ 위촉위원은 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p> |
|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br>시행령<br>제5조 | <p>② 법 제23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br>제4조제3항제2호 | <p>① 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
| 지방시대위원회      | 지방분권균형발전법<br>제64조         | <p>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
| 국가도서관위원회     | 도서관법<br>제12조제3항           | <p>⑦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권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

## 참고자료 5

## 2024년 유물관리위원회 동일안건 중복심의 목록

| 구분             | 순번 | 유역명 | 안건번호        | 계획명                     |
|----------------|----|-----|-------------|-------------------------|
| 2개<br>유역<br>중복 | 1  | 한강  | [제2024-7호]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방사업계획(안)     |
|                | 2  | 낙동강 | [제2024-3호]  |                         |
|                | 3  | 한강  | [제2024-71호] | 경기도 물관리기술발전 및 물산업진흥시행계획 |
|                | 4  | 금강  | [제2024-31호] |                         |
|                | 5  | 한강  | [제2024-60호] | 경기도 지역사방사업계획            |
|                | 6  | 금강  | [제2024-26호] |                         |
|                | 7  | 낙동강 | [제2024-29호] | 경남 지역사방사업계획             |
|                | 8  | 영산강 | [제2024-31호] |                         |
|                | 9  | 금강  | [제2024-13호] | 고창군 물재이용관리계획            |
|                | 10 | 영산강 | [제2024-37호] |                         |
|                | 11 | 영산강 | [제2024-9호]  | 구례군 물재이용관리계획(안)         |
|                | 12 | 낙동강 | [제2024-12호] |                         |
|                | 13 | 낙동강 | [제2024-9호]  | 남원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안)        |
|                | 14 | 영산강 | [제2024-17호] |                         |
|                | 15 | 한강  | [제2024-25호] | 단양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
|                | 16 | 낙동강 | [제2024-27호] |                         |
|                | 17 | 한강  | [제2024-36호] | 문경시 수도정비계획              |
|                | 18 | 낙동강 | [제2024-28호] |                         |
|                | 19 | 한강  | [제2024-51호] | 문경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
|                | 20 | 낙동강 | [제2024-42호] |                         |
|                | 21 | 영산강 | [제2024-1호]  | 부안군 물재이용관리계획(안)         |
|                | 22 | 금강  | [제2024-5호]  |                         |
|                | 23 | 한강  | [제2024-20호] | 아산시 수도정비계획              |
|                | 24 | 금강  | [제2024-12호] |                         |

|                |    |     |             |                      |
|----------------|----|-----|-------------|----------------------|
|                | 25 | 한강  | [제2024-44호] | 안성시 물재이용관리계획         |
|                | 26 | 금강  | [제2024-20호] |                      |
|                | 27 | 한강  | [제2024-31호] | 안성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
|                | 28 | 금강  | [제2024-18호] |                      |
|                | 29 | 한강  | [제2024-14호] | 영주시 물재이용관리계획(안)      |
|                | 30 | 낙동강 | [제2024-11호] |                      |
|                | 31 | 한강  | [제2024-34호] | 음성군 수도정비계획           |
|                | 32 | 금강  | [제2024-16호] |                      |
|                | 33 | 금강  | [제2024-3호]  | 임실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안)     |
|                | 34 | 영산강 | [제2024-2호]  |                      |
|                | 35 | 낙동강 | [제2024-2호]  | 전라북도 제3차 지역사방사업계획(안) |
|                | 36 | 영산강 | [제2024-6호]  |                      |
|                | 37 | 금강  | [제2024-17호] | 정읍시 물재이용관리계획         |
|                | 38 | 영산강 | [제2024-35호] |                      |
|                | 39 | 한강  | [제2024-11호] | 태백시 물재이용관리계획(안)      |
|                | 40 | 낙동강 | [제2024-10호] |                      |
|                | 41 | 낙동강 | [제2024-50호] | 하동군 수도정비계획           |
|                | 42 | 영산강 | [제2024-49호] |                      |
| 3개<br>유역<br>중복 | 43 | 한강  | [제2024-45호] | 경북 지역사방사업계획          |
|                | 44 | 낙동강 | [제2024-37호] |                      |
|                | 45 | 금강  | [제2024-22호] |                      |
|                | 46 | 한강  | [제2024-50호] | 상주시 수도정비계획           |
|                | 47 | 낙동강 | [제2024-39호] |                      |
|                | 48 | 금강  | [제2024-24호] |                      |
|                | 49 | 한강  | [제2024-35호] | 충북 지역사방사업계획          |
|                | 50 | 낙동강 | [제2024-30호] |                      |
|                | 51 | 금강  | [제2024-15호] |                      |